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5. 11 선고 2019가합312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전재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혜민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유현송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김수부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정희재

5. F

6. 주식회사 G

변론 종결 2021. 4. 20.

판결 선고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H 사이에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주식회사 H에게, 피고 C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는 별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G은 별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I은 2011. 3. 1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H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H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1차9호로 공사대금 7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7.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1. 4.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26. 채무자를 I으로, 제3채무자를 H으로 하여 이 법원 2015카단605호로 I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청구채권: 이 법원 2011가합4936호로 확정된 197,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금액: 347,58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28.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6046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11. "I은 원고에게 197,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6.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7타채364호로 I이 H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416,764,227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2. 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카단605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47,58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9,184,277원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8. H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202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5. "H은 원고에게 416,764,227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2. 22. 확정되었다.

바. H은 2014. 9. 30.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신탁기간을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1순위 우선수익자 K조합(18억 7993만 원), L조합(26억 533만 원), M조합(12억 3,643만 원), N조합(13억 5,577만 원), O조합(13억 2,431만 원), P조합(19억 9,823만 원), 공동 1-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13억 5천만 원), Q증권(8억 5천만 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R은행 강릉여신관리단(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41억 2,500만 원), Q증권(12억 천만 원),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 S회사(26억 4,100만 원), T회사(4억 4천만 원), U회사(3억 원), 4순위 우선수익자 Q증권(6억 2,500만 원), 수익자 H, 신탁부동산을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135채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전체 신탁부동산의 분양가격 합계액은 178억 298만원, 감정가격 합계액은 133억 8천만 원이었고,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의 분양가격과 감정가격, 호별상환금액은 아래와 같다.

별지 1 기재	V호	159,200,000	117,000,000	105,300,000
별지 2 기재	W호	161,800,000	121,000,000	108,900,000
별지 3 기재	X호	170,300,000	112,000,000	100,800,000

별지 1 기재	V호	159,200,000	117,000,000	105,300,000
별지 4 기재	Y호	191,200,000	128,000,000	115,200,000
별지 5 기재	Z호	166,000,000	128,000,000	115,200,000
별지 6 기재	AA호	191,200,000	128,000,000	115,200,000

아. H 소유였던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J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4.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H과 피고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이나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H은 신탁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차.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7. 26. 피고 C 앞으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10. 피고 D 앞으로, 별지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피고 E 앞으로, 별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피고 F 앞으로, 별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E, F, G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9.경 H이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아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는데도 1년이 지난 뒤인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올나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9.경 H이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더 나아가 H과 피고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H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3. 3.경 피고 B에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H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H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H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C, D, E, F, G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H과 피고 B이 2016. 3. 3. 별지 1 내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12. 22. 이 법원 2017가합202호 판결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였지만, 원고는 2015. 6. 26. 이 법원 2015카단605호로 I의 H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7. 2. 7. 이 법원 2017타채36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2017. 3. 8. H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법원 2015카단605호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H과 피고 B의 2016. 3. 3.자 매매계약 이후에 이 법원 2017타채36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고, 이 법원 2017가합202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전부금 채권은 H과 피고 B 사이의 2016. 3. 3.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H과 피고 B의 매매계약 당시 H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재산에 관한 판단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H은 2014. 9. 30. J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7.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경우 H과 피고 B의 매매계약 당시 H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재산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 아니라,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H이 가지는 수익권이다.

2) H이 수익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H이 2016. 3. 3. 피고 B에 별지 1 내지 6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H이 가지는 수익권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앞서 제시한 증거에 더하여 을가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H이 가지는 수익권은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들의 우선수익금액의 합계액은 224억 4,100만원으로 전체 신탁재산의 감정가격 합계액 133억 8천만 원과 분양가격 합계액 178억 298만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② H이 2016. 3. 3.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의 실제 채권액은 18,063,466,294원으로 신탁계약 당시의 전체 신탁재산의 감정가격과 분양가격 합계액을 넘고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신탁재산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남은 신탁재산의 감정가격이나 분양가격 합계액은 우선수익자들의 실제 채권액보다 적을 것으로 추인된다.

③ 피고들이 H이나 피고 B에서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거래가액도 분양가격을 크게 넘지 않은 금액이었고, 다른 호수들도 분양가격을 크게 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④ H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와 금융비용 등 소요비용과 J에 지급해야 할 신탁보수까지 고려하면 수익권의 가치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H이 2016. 3. 3. 피고 B와 매매계약을 통해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H이 가지는 수익권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대현

판사이재민

판사고병용

별지